

제22장 일반적 규정과 예외

제22.1조 일반적 예외

1. 제2장(상품 무역),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, 제4장(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), 제5장(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) 및 제16장(협력)의 목적상,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.

2. 제7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, 제9장(통신), 제10장(자연인의 이동) 및 제15장(전자상거래)⁹¹의 목적상, GATS 제14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.

3. 제11장(투자)의 목적상, 그러한 조치가 투자 간 또는 투자자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거나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
- 나.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- 다. 예술적,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된 조치, 또는
- 라.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

양 당사국은 가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라호에 언급된 조치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.

4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.

⁹¹ 이 조는 전자적 전송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.

제22.2조 필수적 안보⁹²

1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 - 가.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
 - 나.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 - 1)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
 - 2) 무기,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과 재료에서의 그러한 거래와 관련되거나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되는 조치, 또는
 - 3)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, 또는
 - 다. 당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2.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조치를 하는 당사국은, 가능한 한도에서, 취해진 조치와 그 종료에 대해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.

제22.3조 과세

1.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2. 다음의 규정은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 - 가. 제2장(상품 무역)
 - 나. 제7.2조(내국민 대우)와 제8.2조(내국민 대우)
 - 다. 그 과세조치가 간접세인 경우, 제7.3조(최혜국 대우)와 제8.3조(최혜국 대우)
 - 라. 그 과세조치가 간접세인 경우, 제11.3조(내국민 대우)와 제11.4조(최혜국 대우), 그리고

⁹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당사국이 제11장(투자)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이 장을 원용하는 경우, 그 사안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는 그 예외가 적용됨을 판정한다.

마. 제11.9조제2항부터 제11.9조제9항까지

3.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제2항에서 언급된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가. 조세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이 협정의 최혜국 대우 의무

나.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

다.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

라.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위의 어떠한 조들에 대해서도 그 개정 시점에서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개정

마. 직접세에 대한 그 조에서의 제한과 상관없이 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, 또는

바. 연금신탁, 퇴직기금, 또는 연금, 퇴직연금 또는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그 밖의 약정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러한 신탁, 기금 또는 그 밖의 약정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, 규제 또는 감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

4. 제11.16조(중재 청구 제기)는 수용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
5. 제11.7조(수용 및 보상)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그러나, 이 항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11.7조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.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11.7조를 원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는, 제11.16조제2항에 따른 의사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 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하여야 한다.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,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180일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, 투자자는 제11.16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.

6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이 협정과 조세협약 간에 과세조치와 관련된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.

7. 어느 한쪽 당사국이 이 협정과 조세협약 간에 과세조치와 관련된 불합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, 권한 있는 당국은 즉시 협의한다. 이 조의 목적상,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을 포함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기획재정부, 그리고

나. 호주의 경우, 재무부

8. 이 조의 목적상, 과세조치들은 어떠한 관세 또는 수입관세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22.4조 정보의 공개

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제22.5조 비밀유지

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,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면, 정보를 받는 그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. 그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명시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. 정보의 공개가 당사국의 법적 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,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명시적 서면허가 없이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정보를 받은 당사국은 그러한 공개가 있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.